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 2. 1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3080

I. 조례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 출 일 : 2022. 1. 21.

3) 회 부 일 : 2022. 1.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중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인력개발 센터(은평·서초·성동·강동·장애)의 위치를 정비하여 여성의 능 력개발 및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성능력개발원의 위치를 현행화함(안 별표 3).
- 여성인력개발센터(은평·서초·성동·강동·장애)의 위치를 현행화 함(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2) 입법예고('21. 10. 28.~11. 17.)결과: 의견없음

Ⅱ. 검토의견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여성관련시설인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5개소(은평·서초·성동·강동·장애)가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위치정보를 별표에 현행화하려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여성관련시설 위치 현행화 (안 별표 3 및 별표 5)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4조제3호¹) 및 제7조²)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과 같은 조례 제4조제5호³) 및 제9조⁴) 따른 여성 인력개발센터 5개소의 주소지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여 별표에 반 영하려는 것임.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3.}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조정·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 과 같다.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 청 등) ① 제4조제5호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 구분 | 시설명 | 현행 | 개정안 | 변경 시기 |
|-----------|----------------|--|-------------------------------|----------|
| 안 별표 3 | 여성능력개발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도화동) | '18.9. |
| 안 별표 5 | 은평여성인력개 발센터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50(불광동)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76(녹번동) | '18.4. |
| | 서초여성인력개 발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12-3(서초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6(양재동) | '18.1. |
| | 성동여성인력개 발센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2길 54(도선동)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성수동) | '19.12. |
| | 강동여성인력개 발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0(둔촌동) 신성빌딩 4층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8(길동) | '19.5. |
| | 장애여성인력개 발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1길 34(등촌동), 투에프코트 빌딩 7층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6(화곡동) | '21.11. |

- 현행 조례에 여성발전센터(5개소) 및 여성인력개발센터(18개소) 등 여성관련시설 33개소5)의 종류와 명칭, 기능을 포함한 주소지 (위치)까지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은 시 관할 여성관련시설로서의 위상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제도적 근거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시민들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실히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동 개정안에 따른 여성관련시설의 위치 변경 시기는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만 4년 전인 2018년 1월이었고, 장애여성인 력개발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 이전시기가 2년 이상 지났 음에도 위치 변경 사항이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⁵⁾ 여성플라자 1개소, 스페이스 살림 1개소,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1개소, 여성능력개 발원 1개소, 여성발전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 서울여담재 1개소로 총 33개소가 현행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 중에 있음.

- 따라서 향후 입법상의 지연 또는 실기(失期)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 등으로 인한 위치 변경 발생시 신 속하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신규시설의 설치, 시설명 및 주소 변경 등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 보를 보다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 등 을 시장이 고시6)'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관련시설의 위치 관련 사항을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할 것임.

3 종합 의견

- 조례안은 별표에 따로 명시하고 있는 여성관련시설의 주소 정보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경우 임대료 상승 등으로 공간 이전에 따른 위치 정보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입법상의 지연 또는 실기(失期)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편 별표 사항을 고시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임.

^{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